

# 산업체협의회 운영 규정

<2015. 1. 1. 제정>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사단법인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(이하 “학회” 라 한다)의 산학연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본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업체간의 실질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간 협력 및 공조 분위기 조성
2. 산업체의 수요가 반영된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 발굴
3. 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
4. 산학연 친목 활동
5. 기타사항

**제3조(구성)** 본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, 간사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, 협의회장은 산학협동이사로서 보하고 협의회 내에서 호선하여 학회장이 위촉하며, 간사는 협의회장이 위촉한다. 위원은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사의 대표 혹은 회원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4조(회원사)**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마이크로나노시스템 관련 산업체로서 본 학회의 특별회원 입회절차 및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산업체로 한다.

**제5조(운영)** 본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회원사가 납부한 특별회원 연회비로 하며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**제6조(회의)** 본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협의회장이 소집하며,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 (친선교류가 목적이므로 의결 정족수는 따로 정하지 않음)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